

統一新羅 內衣, 短衣 考

권 준희 · 조우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f *Shilla*(新羅)'s *Naeoe*(内衣), *Danoe*(短衣)

Jun-Hee Kweon · Woo-Hyun Jo*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2002. 1. 14 투고)

ABSTRACT

Heungdukwang's(興德王) costume ordinance(834A.D.) is a very important written historical record because it reveals *Tongil Shilla's*(統一新羅) costume. But among the clothing pieces that appeared in *Heungdukwang's*(興德王) costume ordinance, classification of *Naeoe*(内衣) and *Danoe*(短衣) is not clear. This study focuses on the categorization of *Naeoe*(内衣) and *Danoe*(短衣).

Upper garments included among costume ordinance were *Pyooe*(表衣), *Naeoe*(内衣) and *Danoe*(短衣). *Pyooe*(表衣) and *Naeoe*(内衣) were unisex, while *Danoe*(短衣) was worn only by women excluding the lower class. *Pyooe*(表衣) is applicable to *Po*(袍), *Naeoe*(内衣) is applicable to *Yu*(襦).

Shilla's(新羅) upper garments appearing in visual records are as follows :

- With the exception of *Pyooe*(表衣), the length of men's upper garments were between hip and knee length. These upper garments featured V-neck and round neck styles with the left side of the garments folded over the right side.
- Again excluding *Pyooe*(表衣), women's upper garments were similar to men's upper garments having V-neck and round necklines. We know this to be true from the relics found during the excavations of *Hwangsungdong* and *Yonggangdong*, as well as from the women in the stone reliefs of *Sangju*. Although we know the shape of necklines, the length of upper garments remained a mystery, because women of that time tucked in their upper garments into the skirts and/or wore an over garment. However a clay doll found around *Bulguksa*(佛國寺) wearing a knee length garment with V-neck. The upper garment was opened in the front and was worn over another garment with same length and round neckline.

At that time, The upper garments found in China and Japan, were not much different than those found in *Shilla*(新羅). They also included garments that were waist length, had peach-shaped necklines, or were worn over head.

Shilla's(新羅) traditional upper garment was between hip and knee length, but with the introduction and influence of Chinese costume, upper garments with a length coming down to the high waist line began to appear. In addition to Chinese influence, because *Shilla's*(新羅) women wore the upper garment first and then the lower garment, a long upper garment was not necessary. These shorter upper garments came to be known as '*Danoe*(短衣)'

When we perceive clothing, we look at silhouette first and then the details. Silhouette is much determined by length and neckline or the front of the garment determines the details. So we need to attention to the basis of ancient dress classifications. These classifications were according to first length [*Po*(袍), *Yu*(襦)] and then neckline [*Danryoung*(團領), *Jingryoung*(直領)]

As a result, *Naeoe*(內衣) and *Danoe*(短衣) are classified by the length. The length of *Naeoe*(內衣) was between hip and knee length while *Danoe*(短衣) was waist length. *Danoe*(短衣) was worn by putting the bottom of it inside skirt while *Naeoe*(內衣) was worn over a skirt or pants. But both had V-neck and round neck styles, and styles with the left side of the garments folded over the right side.

Key words : *Tongil Shilla*(統一新羅), *Naeoe*(內衣), *Danoe*(短衣), *Po*(袍), *Yu*(襦),
Heungdukwang(興德王)

I. 서 론

統一新羅期 중국 복식과의 접촉은 이후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諸賜官服제도의 시발점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隋·唐 아래 군사적·문화적 위압 속에서도 통일신라는 정치적 자립과 문화적 자존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측으로부터 공존할 수 있는 동반자적 위치를 확보하였고, 통일신라의 對唐關係는 한국민족의 성장이나 문화발전의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자립과 개발에 수반되는 내적 필요성의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조선시대의 외교가 갖는 타율성과 사대성과는 다른 면을 지닌다.¹⁾ 그리고 이러한 통일신라의 문화적 자립성은 복식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을 것이라 여겨지며 그 단편적인 예 중의 하나가 바로 저고리라고 판단된다. 저고리는 下衣인 바지, 치마와 함께 삼국시대 아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존속되어 온 한국 전통 복식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저고리에 대해서는 당시의 시각자료인 황성동, 용강동 토용에 의하면 여자의 경우 저고리를 먼저 착용하고 그 위에 치마를 착용함으로써 삼국시대 이래 直領交衽式 저고리와는 달랐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唐 복식 도입의 결과물로 인식된다. 그러나 불국사 부근에서 발견된 土製여인상은 치마를 먼저 착용하고 그 위에 저고리를 착용함으로써 삼국시대 이래의 전통 착장법을 보이고 있고 그 형태에서도 古式을 유지하고 있다. 즉 당시 여자 저고리의 두 가지 양식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외래 복식의 유입 이후 고유 복식과 외래 복식의 혼용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들 저고리는 興德王9년 (834)에 내려진 服飾令 중에 나타난 內衣 혹은 短衣로 불리워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들 저고리류 명칭에 대한 해석은 시각자료와 함께 중국의 옛 字書에 기록된 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內衣와 短衣의 구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異論이 분분한 상태이다. 여기에서는 고대 인들에게 복식의 분류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보이고, 외래 복식의 도입으로 새로운 형태의 복식이 착용되면서 이와 고유 복식과의 구분은 명 칭상에서도 드러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저고리류에 관한 시각자료와 문헌자료를 종합하여 당시 内衣, 短衣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唐 복식 일색으로 통일신라의 복식을 규정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유복식의 존속, 고유복식과 외래복식의 혼용된 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통일신라 복식의 一段을 짚어보고자 한다.

II. 흥덕왕 복식령의 内衣, 短衣

興德王9년(834)에 내려진 服飾令은 統一新羅의 복식제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三國史記』色服條의 기록에 의하면²⁾ 아는 신분에 따른 엄격한 복식의 구분 및 사치를 금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었다. 服飾令에 나타난 복식의 구성은 男子는 冠帽인 檻頭와 그리고 表衣, 内衣, 半臂, 裙, 腰帶, 鞍, 鞍帶, 繢, 緋이고 여자는 表衣, 内衣, 半臂, 裙, 緋, 褙襦, 短衣, 表裳, 褙襍, 内裳, 帶, 繢綉, 繢, 梳, 銀, 冠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表衣, 内衣, 半臂, 裙만이 남녀 공용의 복식이었고 이 중 表衣, 内衣, 裙는 貞骨에서 平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衣, 短衣에 대한 언급 이전에 먼저 남녀 모두 착용되었던 表衣와 内衣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表衣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衫라고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内衣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말 그대로 안에 입는 옷을 内衣로 보는 견해이다. 다만 이 견해는 表衣 아래 입는 중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衫의 일종으로 보는 의견³⁾과 걸옷으로 衫를 입든 衫를 입든 그 안에 입은 것이 바로 内衣라고 보는 의견⁴⁾으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衣와 衫를 입었으나 목둘레에 등근 깃이 표현되어 있

어 이를 内衣라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는 内衣가 모든 신분의 남녀에게 착용이 허락되었으며 또한 고급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꼭 안에 입는 옷만을 지적한 것만은 아니고 表衣(袍)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内衣라는 용어를 썼지만 저고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⁵⁾

그러나 첫 번째 안에 입는 옷의 개념으로 内衣를 볼 경우 남자의 복식 중에서 저고리에 해당하는 명칭을 찾을 수 없어 繢, 심지어 鞍帶까지 규정하였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흥덕왕 복식령 중 남자 表衣와 内衣의 소재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1>과 같은데 이를 보면 表衣에 비하여 内衣에 활선 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진물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제가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입의로 고급 소재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즉 表衣는 말 그대로 가장 겉에 착용하는 衫에 해당하며 衫 안에 착용하였던 衫는 内衣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남자와 달리 表衣 이외의 上衣 명칭으로 内衣와 短衣 2가지 종류가 기록되어 있는데 内衣는 모든 계층의 여자들에게 규제가 가해진 반면 短衣는 平人女에게는 규제가 보이지 않아 4등품까지의 여자에게만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短衣는 『說文』의 繢에 대한 설명에서 “繢 短衣也 一曰離澁”이라하여 繢로 보는 견해가 있다.⁶⁾ 그러나 『說文』의 설명에서 繢를 短衣라 본 것은 衣와 비교하여 짧다는 설명을 위한 것으로 短衣를 고유명사 즉 하나의 복식 명칭으로 본 것은 아니다. 물론 表衣를 衣로 본다면 그 이외의 上衣 명칭으로 나오는 内衣, 短衣는 저고리류에 속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남녀 공용으로 모든 신분에서 착용할 수 있었던 内衣와 4등품 이상 여자에게 착용된 短衣가 어떤 형태적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이다. 이에 통일신라와 동시기 주변국의 시각자료에 나타난 저고리의 형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3> 흥덕왕 복식령 중의 表衣, 内衣, 短衣 규제

구분	眞骨大等	眞骨女	六頭品	六頭品 女	五頭品	五頭品 女	四頭品	四頭品 女	平人	平人女
表衣	禁 罽繡錦羅	禁 罽繡錦羅	只用 綿紬紬布	只用 中小文綾純絹	只用 布	只用 無文獨織	只用 布	只用 綿紬以下	只用 布	只用 綿紬布
내衣		禁 罽繡羅	只用 小文綾 純絹布	禁 罽繡錦 野草羅	只用 小文綾 純絹布	只用 小文綾 純絹布	只用 純絹純紬 布	只用 小文綾以下	只用 絹布	只用 純絹 綿紬布
短衣				禁 罽繡錦羅 布紡羅 野草羅 金銀泥		禁 罽繡錦總 羅布紡羅 野草羅 金銀泥纈綸		只用 絹以下		

III. 시각자료에 나타난 저고리 형태 분석

통일신라시대의 시각자료 중 남자上衣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8세기末 惠恭王 때의 金庾信墓十二支像과 9세기 前半期의 憲德王陵 十二支像, 이차돈 順교비, 慶州市 沙正洞 출토 狩獵文塗<그림1>에서 直領襦를 겉으로 착용한 모습이 보이고 또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宮殿壁畫(7세기 中후반~8세기 초) 한인 사절<그림2>는 庫領襦를 착용한 모습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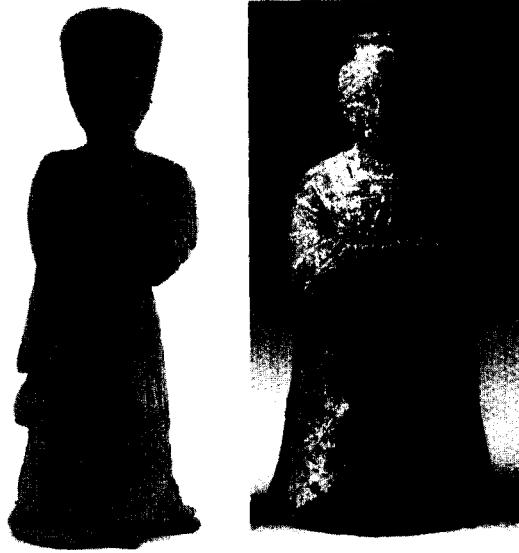


<그림1> 『국립경주박물관』, 도록, 통천문화사, 1993, 도판75



<그림2> 『한국인의 얼굴』, 국립민속박물관 도록, 1994, 도판172

여자의 경우는 황성동 토용<그림3>과 용강동 토용<그림4>를 들 수 있고 이외에 불국사부근에서 발견된 개인소장의 토제 여인상<그림5>, 상주 소재 주악천인상과 공양천인상<그림6>이 있다. 우선 陞城洞, 龍江洞 古墳出土 여자상<그림3, 4>는 모두 가슴높이에서 여민 裳 아래에 上衣를 입고 있어 착용된 上衣가 어느 정도의 길이였는지 알 수는 없고 上衣의 목둘레선은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남자 토우에서 단령포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둘레선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자토우의 경우에도 庫領으로 추측된다. 다음은 경



<그림3> 國立慶州博物館, 『慶州皇城洞石室墳』, 1993, 원색사진3(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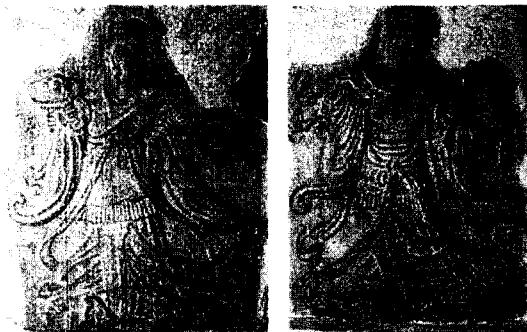
<그림4> 『한국인의 얼굴』, 국립민속박물관 도록, 1994, 도판52 부분(우)



<그림5> 河外柱 編, 『鳩峰 河外柱 所藏品圖錄』, 서울 : 호영, 1991, 도판22

북상주시 남성동 용화전(龍華殿) 소재의 8세기 말 경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奏樂天人像과 供養天人像

<그림6>은 모두 直領 半袖衣의 아래에 團領의 옷을 받쳐 입고 있지만 역시 半袖衣 아래에 입고 있어 길이는 알 수 없다.



<그림6> (<http://kr.encycl.yahoo.com/ifinal.html?id=8583>
<http://kr.encycl.yahoo.com/ifinal.html?id=8582>)

그런데 불국사 주변에서 수습하였다고 전해지는 『造漆漆女人立像⁷⁾ <그림5>를 보면 直領上衣 안에 團領의 上衣를 겹쳐 입고 있다. 이 여인상의 복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깃 이하 아래 도련선까지, 그리고 수구에 이중線 사이에 빗금선이 있는 横 장식의 直領襦와 裳을 입고 있는데 直領襦는 무릎선 정도의 길이이다. 깃 이하 도련선까지의 横 장식 중 빗금 부분 그리고 수구는 이중의 線과 그 사이 빗금선 모두 금박연으로 장식한 흔적을 볼 수 있어 실제 복식에서는 금박 혹은 금사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어깨 부위에 약간의 돌출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반비로 보는 견해⁸⁾도 있지만 본인이 고찰한 바에 의하면 어깨의 돌출 부분은 확실하지만 길부분과 소매부분에 다른 표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아 李勣묘(670) 벽화 인물<그림7>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운전의 일종으로 판단된다. 만약 반비의 일종이었다면, 수구부분에서 直領上衣와 團領上衣의 이중의 수구를 명확히 표현한 점으로 미루어 반비 소매의 수구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直領의 衫 안에는 가슴선에 횡으로 横 장식이 보이고 直領襦의 수구 양쪽으로 착수의 수구가 표현되어 있어 비교적 깃 파임이 큰 團領깃에



<그림7> 張鴻修, 『中國唐墓壁畫集』, 嶺南美術出版社, 1995, 도판44

착수 소매의 上衣를 먼저 착용하고 그 위에 直領의 襦를 착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直領襦는 앞에서 완전히 여미지지 않고 약간 벌어진 對衿形으로 안에 착용한 圉領 上衣의 길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 길이는 무릎선 정도의 길이로 겉에 입은 直領襦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고찰 결과 통일 신라 시대 남자와 여자에게 입혀진 衫衣외의 上衣에서는 깃은 直領과 圉領이 모두 보이고 그 길이에서 무릎선 정도 길이의 것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자의 경우 上衣 위에 치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당시 唐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唐에서 여자의 일반적인 착용법을 시각자료로부터 보면 襦를 입고 그 위에 衣을 착용하는 방법인데 이 때의 襦는 領形에서 直領<그림8>과 圉領<그림9> 모두 존재하고 이외에 복승아형<그림10>과 方領<그림11>도 보여진다. 그리고 衫形에 있어서도 對襢과 交襢이 모두 존재하고 또한 관두의형도 보여지는 등 다양한 형태의 襦가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대부분의 시각자료에서 보



<그림8>

- 陝西省博物館 編, 『隋唐文化』, 香港: 中華書局, 1989, 도판8,
- 『中國美術全集』雕塑編4, 隋唐彫塑, 문물출판사, 1988, 도판 151



<그림9>

- 陝西省考古研究所 編, 『陝西新出土唐墓壁畫』, 重慶: 重慶出版社, 1998, 도판113
- 張鴻修, 『中國唐墓壁畫集』, 嶺南美術出版社, 1995, 도판42
-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美術全集』繪畫編2 隋唐五代繪畫, 文物出版社, 1985, 도판 35부분

면 襦 위에 衣을 착용함으로써 襦의 길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衣 위로 襦를 내어 입은 경우를 보면 모두 허리선 바로 아래 혹은 이보다는 길지만

엉덩이 선까지는 내려오지 않는 길이의 것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0> 張鴻修, 『中國唐墓壁畫集』, 嶺南美術出版社,
1995, 도판127



<그림11> 國家文物局主編, 『中國文物精華大全』(陶瓷卷),
商務印書館·上海辭書出版社, 1993, 도판225

다음 일본의 경우는 정창원에 전하는 나라시대의 실물로부터 그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데 袍이의 衣로 衫이 전해지고 있다.⁹⁾ 衫은 단령과 직령이 모두 존재하고 또한 貴頭衣형도 보이며 길이는 일반적으로 80cm내외이고 이보다 짧게는 50.5cm, 길게는 100cm이상의 것도 전하고 있다.

이상의 예로부터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저고리의 領形과 길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衣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唐의 시각자료에 의하면 허리선 정도 길이의 襦도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는데 통일신라시대 당과 신라의 활발한 교류관계를 감안한다면 신라에서도 기존의 엉덩이선 길이의 襦 이외에 여성에게는 허리선 길이의 襦도 공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각자료만으로 홍덕왕 복식령 중에 보이는 内衣와 短衣의 차이점을 밝히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고대인들의 복식 분류 기준을 살펴보자 한다.

IV. 고대 복식의 분류 기준

-內衣와 短衣, 半臂와 褙襡-

『신당서』¹⁰⁾에 의하면 신라의 부인은 長襦를 입는다고 전하고 있을 정도로 신라에서는 긴 저고리를 착용하였다. 그런데 신라의 여자에게서 短衣라는 새로운 명칭이 왜 필요하였을까. 여기에서 『三國史記』色服條女子服飾에 대한 규제가 남녀공용의 복식인 表衣, 内衣, 半臂, 裳 다음에 裳, 褙襡, 短衣, 表裳, 褙襡, 內裳, 帶, 褪拗, 襪, 梳, 銀, 冠 순으로 기술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短衣는 裳, 褙襡, 表裳, 褙襡, 內裳과 함께 기술되어 短衣가 裳, 褙襡, 表裳, 褙襡, 內裳 등과 함께 착용된 복식이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이에 대해 李京子¹¹⁾도 그 記述順序에 비추어 볼 때 表衣와 内衣, 褙襡과 短衣가 서로 상관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新羅女服에는 2가지 양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허리에서 裳을 여며 입고 襦를 그 위에 가하는 전통적인 착장법과 달리 襦를 먼저 착용한 후 裳을 가슴높이에서 여며 입게 되면

서 衫과 더불어 착용된 上衣는 기준의 褙와 비교할 때 길이가 짧기 때문에 短衣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가 복식의 형태를 인지할 때 그 외 형(외부선)을 먼저 파악하고 다음에 디테일(내부선)을 인지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많은 종류의 上衣類가 존재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이들 복식의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즉 외부선에 의한 대분류 이후 각 디테일의 상이함에 따른 소분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외부선은 그 길이의 차이에 의해 가장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디테일의 상이함 즉 단령, 직령, 교임, 대임의 차이가 인지되고 이에 따른 소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上衣의 명칭으로 衫, 褙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것은 領形이나 衷形을 고려한 명칭이 아니라 그 길이에 따른 분류에 의한 것이고, 동일한 衣지만 領의 형태에 따라 단령포, 직령포, 그리고 衷의 형태에 따라 交衷袍, 對衷袍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길이에 의한 복식의 분류는 비단 저고리류인 內衣, 短衣에 한정된 것만이 아님은 半臂과 褙襡의 구분에서도 확인된다.

半臂과 褙襡은 4두품 이상의 여자에게만 착용된 것이고 半臂가 남자와 함께 착용된 것과 달리 褙襡은 여성 전용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둘다 無袖 혹은 短袖衣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 뚜렷한 구분을 짓지는 못하고 있다. 시각자료에서 통일신라 여자의 短袖衣 착용은 경북 상주시 남성동 용화전(龍華殿) 소재의 8세기 말경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奏樂天人像과 供養天人像<그림6>과 경주박물관 야외전시물 중 기단석에 묘사된 통일신라시대의 인물<그림12>에서 확인된다. <그림6>에서는 直領 短袖衣의 소매와 도련에 주름 장식이 가해져 있으며 무릎선 길이로 허리에는 帶를 여미고 있고, <그림12>에 묘사된 인물의 半袖衣에서는 <그림6>과 동일하게 소매와 도련에 주름 장식이 가해져 있으나 단령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남자 半臂의 형태는 龍江洞古墳出土 上衣俑에서 그 착용모습을 볼 수 있는데 둥근 목둘레에 전체 복식

의 길이는 무릎 아래선이고 带를 매고 있으며 허리 아래로 솔기가 터져 있는 唐代 缺膀袍의 모습이지만 다만 소매의 길이가 짧은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 사천왕상의 모습에서 한대 아래의 繡飄식 반비도 보인다. 이상의 시각자료를 보면 통일신라시대 남녀에게 착용된 短袖衣는 모두 영덩이선 길이의 것 혹은 남자의 경우 이보다 조금 긴 무릎 아래선 정도의 것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2> 경주박물관 야외전시물 중 기단석에 묘사된 인물(본인촬영)

그런데 문헌에 나타난 短袖 및 無袖衣계통 복식 명칭을 보면 중국의 경우는 漢代이래 ‘繡飄’¹²⁾이라는 명칭이 보이고 그 洋¹³⁾에 의하면 이를 唐代의 半臂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외에 ‘半臂’¹⁴⁾, ‘背子’¹⁵⁾, ‘半袖’¹⁶⁾ 뿐만 아니라 ‘襦襡’도 半袖 혹은 無袖衣 계통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단순히 명칭만이 기록되어 있고 그 형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명칭간의 구분은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唐代의 회화 및 도용에서는 많은 종류의 短袖衣類가 보여지는데 이를 領과 衷에 따라 구분해 보면 직령교임¹⁷⁾, 직령대임, 단령대임, 복승아형領을 지닌 貨頭衣形 등 다양한 형태가 보여지고 그 착장방법에 있어서도 褙와 短袖衣를 먼저 착용한 후 衫을 착용하거나 褙와 衫을 착용하고 短袖衣를 가장 겉에 가하는 방법 두가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短袖衣를 겉에 착용한 경우 그 길이를 보면 무릎길이의 것과 허리선 아래길이 두가지<그림13>로 전자의 경우에는 허리에 별도의 带로 여몄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가슴부위에서 가는 끈을 사용하여 여민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일본의 경우 『和名抄』背子條에는 “背子 辨色立成云背子形如半臂無腰襡之衿衣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背子는 腰襡이 없고 半臂

는 腰襯이 있으며 延喜縫殿寮式年中御服條에는 半臂의 명칭이 있고 同中宮御服條에는 背子의 명칭만이 있어 半臂은 남자의 복식으로 背子는 여자의 복식으로 구분되고 있다.¹⁸⁾



<그림13>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美術全集』 雕塑編4, 隋唐影塑, 文物出版社, 1988,
도판179

이상의 고찰결과 중국은 半臂와 背子의 형태구분이 뚜렷하지 않았고 領의 형태와 衿의 종류, 그 길이에 있어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은 半臂은 남자의 복식으로 腰襯이 있고 背子는 여자의 복식으로 腰襯이 없었다. 그리고 統一新羅는 半臂은 남녀공용의 복식, 褙襠은 여자전용의 복식으로 존재하였지만 褙襠의 명칭은 중국이나 일본의 명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半臂와 褙襠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그 명칭을 달리 사용하였을 것인가인데 앞에서 唐代 여자의 半袖衣는 다양한 종류의 領과 衿의 형태가 모두 보여지고 있었지만 그 길이에서는 무릎 길이의 것과 허리선 아래길이의 것 두 가지가 존재하였고 일본의 반비와 배자에서도 襠의 유무로 반비는 적어도 엉덩이선 길이로 허리의 带가 따로 있고 배자는 이와 달리 襠이 없어 허리선 정도의 길이임이 주목된다.

통일신라의 短袖衣를 보면 앞에서 남자의 반비는 퀄액포와 같으나 짧은 소매가 달린 형태와 같은 단령이지만 소매 끝에 주름 장식이 가해진 경우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모두 길이는 무릎선 정도였다. 그리고 통일신라 여자의 短袖衣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6>과 <그림12>를 보면 남자 반비 중 후자의 것과 동일하지만 단령과 직령이 모두 보인다. 그러나 가장 크게는 그 길이에서 무릎선 정도로 서로 동일하고 領形 이외 기타의 디테일에서 서로 공통점이 보이므로 이를 남자의 것과 같이 半臂로 판단하는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배당에 대한 시각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唐代 여성의 복식에서 허리선 길이의 短袖衣류가 통일신라의 여성에게도 착용되었다면 그것은 남자와 공용으로 착용하였던 무릎길이의 半臂과는 다른 명칭으로 불리워졌을 것이고 이에 褙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부터 남녀공용으로 착용하였던 内衣와 半臂은 엉덩이선 정도 길이의 것이었던 반면 여성에게만 착용되었던 短衣, 褙襠은 치마를 가슴선에서 여며 착용하고 이에 따르는 上衣도 길이를 짧게 하게 되면서 사용하게 된 용어로, 즉 内衣와 短衣 그리고 半臂와 褙襠의 구분은 길이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V. 唐 복식의 도입과 고유복식

『三國史記』 色服條의 기록을 보면 “眞德王 在位 2년(648) 金春秋가 入唐하여 唐儀를 따르기를 청하니 太宗皇帝가 조칙을 내려 그것을 허락하고 겸하여 衣帶를 사여하였다. 마침내 돌아와 시행하여 夷(俗)는 華(俗)로 바뀌고 文武王 在位 4년(664)에는 또 婦人の 服도 개혁하여 이후로는 衣冠이 中國과 같게 되었다”¹⁹⁾라고 기록하여 眞德王代에 이르러 中國의 服制를 받아들이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통일신라의 복식은 언제나 唐 복식 일색이었던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남녀 공용으로 착용된 엉덩이선 길이의 内衣와 달리 여자의 경우 치마를 가슴선에서 여미

게 되면서 착용하게 된 짧은 上衣인 短衣는 唐 복식 도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째, 흥덕왕 복식령에서 内衣와 短衣라는 용어를 설정한 점이다. 중국의 경우 문헌에 기록된 上衣 명칭은 '衣, 衫, 褙, 裳' 등으로 内衣나 短衣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통일신라내 중국복식의 도입으로 짧아진 上衣를 착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褙와 구분하여 短衣라 칭하게 된 것으로, 비록 형태는 빌려왔을지라도 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사용의 독자성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찾을 수 없는 褙襠이라는 용어의 사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한국복식사에서는 외래복식의 도입과 그 착용은 상층에서만 이루어지고 하층민들은 고유복식을 착용하는 이중구조를 지닌다고 서술되고 있다. 그런데 통일신라에서 唐 복식 도입의 결과물이었던 短衣와 달리 고유복식의 형제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内衣는 진골에서 평인에 이르는 모든 신분에서 착용된 복식이었다. 즉 비록 4두품녀 이상에게는 중국식의 短衣가 허용되었지만 고유복식인 内衣 또한 더불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상류층에서도 중국복식과 고유복식을 혼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중국적인 요소와 고유요소의 혼용은 황성동 여용의 경우 비록 短衣에 치마를 가슴선에서 여며 입었지만 머리모양은 唐式的 高髻가 아닌 고유의 쪽진머리를 하고 있는 점, 용강동 남용의 경우 頸과 巾子로 나뉜 복두의 형태에서 巾子가 弓形의 유체를 지니고 있는 점 등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통일신라 내 唐복식과 고유복식의 존재 양상에 대한 논의는 복식사료의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唐복식 일색으로 통일신라의 복식을 설명하려는 기존의 논의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추후의 발굴성과를 기대하고자 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통일신라시대 저고리류에 관한 시각자료와 문헌자료를 종합하여 당시 内衣, 短衣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통일신라의 内衣와 短衣는 우선 길이에 의해 즉 영덩이선에서 무릎선까지의 内衣와 허리선 정도까지의 短衣로 구분될 수 있고 領形으로는 직령과 단령 모두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길이에 의한 구분은 동일한 短袖衣지만 남녀 공용의 半臂와 여성전용의 褶襠에도 적용할 수 있었고 여성의 短衣와 褶襠은 중국복식의 도입으로 치마를 가슴에서 여미게 되면서 착용하게 된 짧은 上衣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록 중국 복식의 도입으로 형태는 빌려왔다고는 하지만 短衣, 褶襠의 용어사용에서는 통일신라의 독자성을 엿볼 수 있었고, 短衣, 褶襠이 허용된 4두품 이상의 상류층에서도 중국복식 일색만은 아니었고 고유의 内衣가 함께 착용됨으로써 외래복식과 고유복식이 혼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申澣植,『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84, 327쪽.
- 2) 『三國史記』卷第33, 雜志第2, 色服條
“興德王卽位九年 大和八年 下教曰 人有上下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淺薄 民競奢華 只尚異物之珍
奇 却嫌土產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
舊章 以申明命 苛或故犯 固有常刑”
- 3) 金東旭,『增補韓國服飾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79, 109쪽.
- 4) 유희경·김문자,『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87쪽, 89쪽.
- 5) 이경자,『韓國服飾史論』, 일지사, 1983, 31쪽.
- 6) 金東旭, 앞책, 1979, 110쪽.
- 7) 도록에 木造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도록 제작시
의 誤字이고 실제로는 土造라고 한다.
- 8) 임명미,『한국의 복식문화(I)』, 경춘사, 1996, 219쪽.
- 9) 關根眞隆,『奈良朝服飾の研究』, 吉川弘文館, 1974, 143-153쪽.
저자는 衫을 内衣로 구분하고 다만 여름에는 이를 겉옷으로도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여기에서의 内衣는 신라의 여자 복제 중의 内衣와는 다른 개념

으로 걸옷 안에 입는 옷의 개념임을 밝혀둔다.

- 10) 『新唐書』卷220 列傳 第145 東夷 新羅
“朝服尚白....男子褐袴 婦長襦 見人必跪 則以手据地爲恭....不粉黛 率美髮以繚首 以珠綵飾之 男子剪髮鬻 冒以黑巾”
- 11)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1983, 30쪽.
- 12) 『後漢書』卷1上, 본기 光武帝上
“更始元年....九月....時三輔吏士東迎更始 見諸將過 皆冠幘 而服婦人衣 諸于繡幘 莫不笑之 或有畏而走者”
- 13) “字書無羃字 續漢書作衆屈 並音其物反 揚雄方言曰 檳褕 其短者 自關之西 謂之衆充 衆屈 郭璞注云 俗名掖 衆屈 據比即是諸于繡幘 如今之半臂也 或繡下有擁字”
- 14) 『事物紀原』
“實錄又曰 隋大業中內官多服半臂 除去長袖也 唐高祖減其袖謂之半臂 今之背子也 江淮之間或曰綽子 士人競服 隋始制之也 今俗名搭子戶”
- 15) 『中華古今注』衫子背子條
“隋大業末 煙帝宮人 百官母妻等 緋羅蹙金飛鳳背子 以爲朝服及禮見賓客舅姑之長服也 天寶年中 四川貢五色織成背子”
- 16) 『舊唐書』卷45 志25 輿服
“九品已上 大事及尋常供奉 並公服 東宮準此 女史則半袖裙襦”
『新唐書』卷24 志14 車服
“公服者 常供奉之服也 去中單 蔽膝 大帶 九品以上大事 常供奉亦如之 半袖裙襦者 東宮女史常供奉之服也 公主 王妃佩 綏同諸王”
- 17) 이때 소매하단에 주름 장식이 있는 경우를 특히 漢代 이후 착용되어온 繡幘로 분류한다.
- 18) 關根眞隆, 앞책, 106-107쪽.
- 19) 『三國史記』卷第33 雜志第2 色服條
“至眞德在位二年 金春秋入唐 請襲唐儀 泰宗皇帝詔可之 兼賜衣帶 遂還來施行 以夷易華 文武王在位四年 又革婦人之服 自此已後 衣冠同於中國”